

의안 번호	2170	【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제출 일자 : 2023. 11. 9.(목)
- 제출 자 : 이명녀 의원 외 9명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11. 9.(월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12. 4.(월)

2. 제안이유

- 100세 이상의 장수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- 신청안내,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)
-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8조)
- 지급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4. 근거법규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-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100세 이상의 장수어르신들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안 임.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「노인복지법」

-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0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